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고지연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16호)

2026.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3. 관계기관 의견	6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5. 8.
3. 회 부 일 : 2025. 5. 9.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 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에,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가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는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선고지연과 당사자가 입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99조의2(선고지연에 대한 보상) ①</u> <u>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u> <u>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u> <u>급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u> <u>당사자가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u> <u>것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u> <u>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u> <u>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u> <u>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u> <u>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u> <u>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u>

	지급기준은 선고지연과 당사자가 입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안의 보상금 신청 절차, 보상 확인 주체 및 보상 결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개정안의 내용
신청 절차	소송당사자가 국가에 신청
보상 확인 주체	국가
보상 결정 기준	선고지연과 소송당사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199조를 통해 중국판결의 선고 시기를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제1심 합의사건 판결은 554.3일, 제1심 단독사건 판결은 246.8일 소요되었고,

항소심의 경우에도 고등법원 사건은 336.9일, 지방법원 사건은 376.8일 소요되는 등¹⁾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5월의 기간을 상회하였음.

그런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종국판결 선고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²⁾ 이에 따라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³⁾⁴⁾

이에 개정안은 종국판결의 선고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내용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민사재판에서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경우 판결선고가 지연되면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해당 기간만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⁵⁾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은 선고지연으로

1) 법원행정처, 2025사법연감 (2024.1.~2024.12.), 2025, 762면.

2)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를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바, 원심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초과하여도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3) 대법원에서 기록이 접수된지 3년 5개월만에 이루어진 판결선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법원은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18. 선고 2006가단199422 등 참고).

4) 참고로, 법원은 형사재판의 판결 선고기간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도 훈시규정으로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8765 판결),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 심판기간 규정(「헌법재판소법」 제38조)을 훈시규정이라 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

인한 소송당사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보상하려는 손실이 현행법에 따라 보상되는 손실 외 어떠한 손실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가가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사건의 요건과 인과관계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2024년 지방법원 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가 499.9건⁶⁾에 달하여 선고기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원은 판결선고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판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현실적·심층적 고려 없이 선고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넷째,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당사자에게 선고지연의 귀책 사유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6) 법원행정처, 2025사법연감 (2024.1.~2024.12.), 2025, 745면.

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확인되면 별다른 제한규정 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 지연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법원의 선고지연에 대한 책임추궁은 기본적으로 ‘배상’의 성질을 띠고 있어 이를 ‘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 법체계와 정합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며, 보상의 요건을 막연히 ‘법원의 선고지연’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061